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1996. 4. 25.

내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4월 9일

· 회부일자 : 1996년 4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124회 임시회

· 제2차 내무위원회(1996. 4. 18)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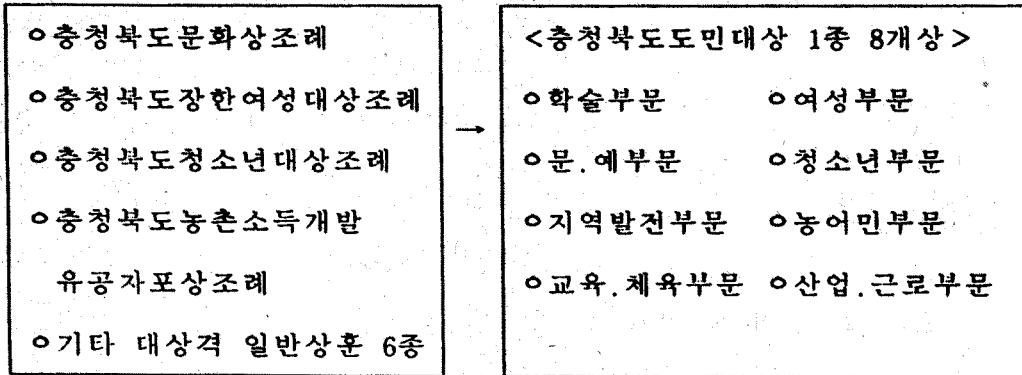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최경주)

가. 제안이유

- 시상이 산발적이며 회수빈번과 각양각색 명칭 사용과,
- 무분별한 시상으로 도지사상의 훈격 및 위상실추
- 그간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온 각종 대상제를 통합하여 「도민대상」을 제정하므로써 대상의 위상을 높이고 그 공적을 확산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현행 10종 59개상 → 1종 8개상(8개부문)으로 통폐합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오창환)

충청북도도민대상 조례안을 검토한 바,

매년 충청북도 도민들중 타의귀감이 되는 자들에 대해 각종대상부문별로 수상대상자를 각양각색으로 일관성없이 선별하여 산발적으로 수여하고 있는 각종 대상 및 포상관련 규정 10종 59개 부문의 시상 종류에 대해 1종 8개부문의 상으로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재정코자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현행 조례로 시행하는 4개조례 18개상과 대상격에 해당하는 6종 41개상 등 59개 부문에 있어서 여러종류의 상훈명칭 사용과 무분별한 시상시기 난립등으로 인해 충북최고의 상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어 대상의 훈격 및 위상을 확립코자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상하고 있는 문화상 7개부문을 학술부문, 문예부문, 지역발전부문, 인재양성부문 4개부분으로 조정하고

비풍양속의 계승발전과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진실된 여성의 삶을 살아오는자에게 수상하고 있는 장한여성대상 4개부문을 여성부문으로 단일화 하였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모범이되는 청소년에게 수상하는 청소년대상 4개부분을 청소년부문으로 단일화 하였으며

농촌소득증대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농촌 소득개발 유공자포상 3개부문과 우수영농클럽부문 14개상 및 식량증산 우수농가에 시상하는 5개 부문을 농어민 부문으로 단일화 하는등과

자랑스러운 충북중소기업인대상 3개부문 및 산업근로대상 3개부문과 이달의 근로왕 12개 부문을 산업근로부문으로 단일화하여 총 도민대상 1종8개 부문으로 통폐합함과 아울러

종전의 4개조례인 충청북도문화상조례, 장한여성대상조례, 청소년대상 조례, 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와 쓔씀이 절약왕의 4개부문등 기타 대상격 일반상훈 6종의 규정은 도민대상조례의 시행과 동시 폐지하도록 하는 폐지조례조항과 함께 기존의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신설조례에 의해 충북도민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간주 한다는 경과 조치등의 부칙 조항을 둔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도민대상으로 제정하여 전도민의 전폭적인 공감대 형성과 도민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상으로의 위상 정립은 물론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영예로운 시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시상명칭을 단일화 하여 명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수정안요지 :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의 제5조(위원회구성)제1항
의 조문중 위원수 “각4인”을 “각5인”으로 자구수정

7. 심사결과 : 수정 동의안 7인중 7인 찬성으로 동조례 재정안 제5조
(위원회구성)제1항의 조문중 위원수 “각4인”을 “각5인”
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 기타부분은 도원안대로 의결

8. 소수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